

의안번호	2201464
의 퇴 인	임미애 의원
회 답 일	2024.07. 11.
추 계 번호	24A173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제13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 “가맹점”이란 제26조의4에 따라 등록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함(제13호) 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u>시장등</u> 및 「<u>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u>」 제2조제2호에 따른 <u>농수산물도매시장</u>의 상인(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현행) 시장등 → (개정안) 시장등 및 농수산물도매시장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조제13호(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정의)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전통시장 등의 상인만 등록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정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¹⁾ 상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가능하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수산물도매시장”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양곡류·청과류·화훼

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구역, 골목형상점가, 자율상권구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함
 - 현재 19.8만 곳의 영업점포가 가맹점으로 등록(전국 영업점포 24.2만 곳 대비 82%, 지류상품권 기준)

※ [참고자료 1] 온누리상품권 사업 개요

- 2023년 기준 온누리상품권은 2조 241억원이 발행되어 2조 8,536억원이 판매되었으며, 3조 563억원이 회수됨

※ [참고자료 2] 온누리상품권 운영현황(2009년~현재)

[표 1] 온누리상품권 운영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발행금액	판매금액	회수	
			금액	누적회수율
2019년	20,074.1	16,852.8	16,622.4	97.0%
2020년	40,486.7	40,138.5	34,084.8	92.9%
2021년	31,573.1	31,721.4	33,808.6	95.8%
2022년	35,391.2	27,034.4	25,259.8	95.4%
2023년	20,241.8	28,536.6	30,563.3	97.1%
2024.5월말	13,159.1	15,607.8	15,763.3	97.3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개정안과 같이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대상을 확대하는 것 자체로는 추가재정소요를 반드시 수반하는 것이 아니나, 향후 가맹점 수 확대에 따라 상품권 발행규모가 확대되는 경우 발행비용 증가에 따른 정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 지류, 모바일, 카드충전 방식에 따라 발행금액의 10% 내외의 추가비용이 발생

류·조수육류(鳥獸肉類)·어류·조개류·갑각류·해조류 및 임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매하게 하기 위하여 제17조에 따라 관할구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표 2] 온누리상품권 발행비용(직접비)

	지류(5%)	모바일(10%)	충전카드(10%)
할인율(할인보전금)	발행금액의 0~5%	발행금액의 10%	발행금액의 10%
발행·판매·회수 수수료	2.80%	1.00%	0.42%

주: 온누리상품권 발행에 따른 간접비(제도운영을 위한 홍보비·시스템운영비 등)를 제외한 금액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다만, 개정안에 따른 가맹점 등록 확대 규모나 이에 따른 상품권 발행 확대 계획 등이 불확정적이어서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농수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에 따르면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점포를 경영하는 중도매인은 2022년 기준 7,943명임
 - － 중도매인: 도매시장 등 개설자에 의해 농수산물의 매수·도매·매매 등 허가를 받은 자²⁾

[표 3] 농수산물 도매시장 유통종사자 수(중도매인)

(단위: 명)

	중도매인		
	개인	법인	합계
2019	5,391	2,797	8,204
2020	5,283	2,868	8,151
2021	5,132	2,711	7,843
2022	5,019	2,924	7,943

자료: 2022년 농수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

- 2024년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는 5조원의 상품권 발행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발행비용(직접비, 예산)은 3,513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2024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시장경영혁신지원 세부사업에 온누리상품권 발행예산으로 3,513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중도매인”(仲都賣人)이란 제25조, 제44조, 제4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나.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상장(非上場)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표 4] 시장경영혁신지원(4154-304) 세부사업(온누리상품권 발행) 편성 내역

- 온누리상품권 발행: 351,348백만원
 - ▶ (비할인판매, 지류) 0.8조원 x 발행·운영수수료 2.8% = 22,400백만원
 - ▶ (5% 할인판매, 지류) 0.6조원 x (발행·운영수수료 2.8% + 할인율 5%) = 46,800백만원
 - ▶ (5% 할인판매, 카드) 1.7조원 x [할인보전금(5%)+발행·판매·회수수료(0.42%)] = 92,140 백만원
 - ▶ (5% 할인판매, 모바일) 0.5조원 x [할인보전금(5%)+발행·판매·회수수료(1.0%)] = 30,000 백만원
 - ▶ (10% 할인판매, 카드) 0.9조원 x [할인보전금(10%)+발행·판매·회수수료(0.42%)] = 93,780백만원
 - ▶ (10% 할인판매, 모바일) 0.5조원 x [할인보전금(10%)+발행·판매·회수수료(1.0%)] = 55,000백만원
 - ▶ (기타운영비) 11,228백만원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지수현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지수현	02-6788-3750	zisu37@nabo.go.kr

[참고자료 1] 온누리상품권 사업 개요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상품권 개요

- (사업목적) 전국 전통시장·상점가에서 이용 가능한 상품권 발행 및 유통을 통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매출 기반 확대 (2009년~현재)
 - * 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2(온누리상품권의 발행)
- (발행목표) 2024년: 5.0조원 발행 (본예산 351,348백만원)
- (발행권종) 지류상품권(5천원·1만원),
카드·모바일상품권(5천원·1만원·3만원·5만원·10만원)
- (판매기관) (지류) 16개 금융기관, (모바일·카드) 전용 앱 내 충전
- 가맹점 현황
 - (사용처) 「전통시장법」 제26조의2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구역, 골목형상점가, 자율상권구역 내 가맹점
 - * 2020.8.12일부터 「전통시장법」에 따른 골목형상점가의 상인도 가맹 허용
 - (등록현황) 지류상품권 19.4만 곳, 모바일상품권 9.6만 곳, 충전식 카드형 가맹점 10만 곳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구역, 골목형상점가(2020.8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율상권구역(2022.4월)

[참고자료 2] 온누리상품권 운영현황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단위: 억원, %)

구분	발행금액	판매금액	회수	
			금액	누적회수율
2009년	200.0	104.6	63.1	60.3%
2010년	900.0	753.3	638.3	81.8%
2011년	2,400.0	2,224.3	1,809.8	81.5%
2012년	4,060.0	4,257.7	3,862.1	86.8%
2013년	5,000.0	3,257.8	2,918.3	87.7%
2014년	6,360.0	4,801.0	4,676.4	90.7%
2015년	7,381.0	8,607.2	7,818.7	90.8%
2016년	10,030.0	10,945.8	10,858.4	93.4%
2017년	12,850.0	10,742.6	11,169.8	95.9%
2018년	15,016.3	14,916.0	14,703.5	96.5%
2019년	20,074.1	16,852.8	16,622.4	97.0%
2020년	40,486.7	40,138.5	34,084.8	92.9%
2021년	31,573.1	31,721.4	33,808.6	95.8%
2022년	35,391.2	27,034.4	25,259.8	95.4%
2023년	20,241.8	28,536.6	30,563.3	97.1%
2024.5월 말	13,159.1	15,607.8	15,763.3	97.3%
총누계	225,123.2	220,501.8	214,620.7	97.3%